

外國人取得土地之規定及限制

與重測業務宣導

외국인 토지취득에 따른 규정, 제한

및 재측량업무 공지사항

1. 外國人在中華民國取得或設定土地權利，以依條約或其本國法律，中華民國人民得在該國享受同樣權利者為限。

외국인은 중화민국(대만)에서 토지권리를 취득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관련 조약 또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르며, 중화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같은 권리를 누리는 자에 한한다.

2. 外國人在我國取得或設定土地權利互惠國家一覽表（請依檔案格式自行選擇下載）

중화민국내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설정에 따른 상호 호혜적 국가 일람표(파일의 포맷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람)

- (1)<http://www.land.moi.gov.tw/onlinebill/705-n1.pdf>
- (2)<http://www.land.moi.gov.tw/onlinebill/705-n.doc>
- (3)<http://www.land.moi.gov.tw/onlinebill/705-n1.odt>

3. 林地、漁地、狩獵地、鹽地、礦地、水源地、要塞軍備區域及領域邊境之土地，不得移轉（不包括繼承）、設定負擔或租賃於外國人。

임지, 양어지, 수렵지, 염지, 광산지, 수원지, 요새·무장 지역 및 영역 국경의 토지는 이전(승계 미포함), 부담 설정 또는 외국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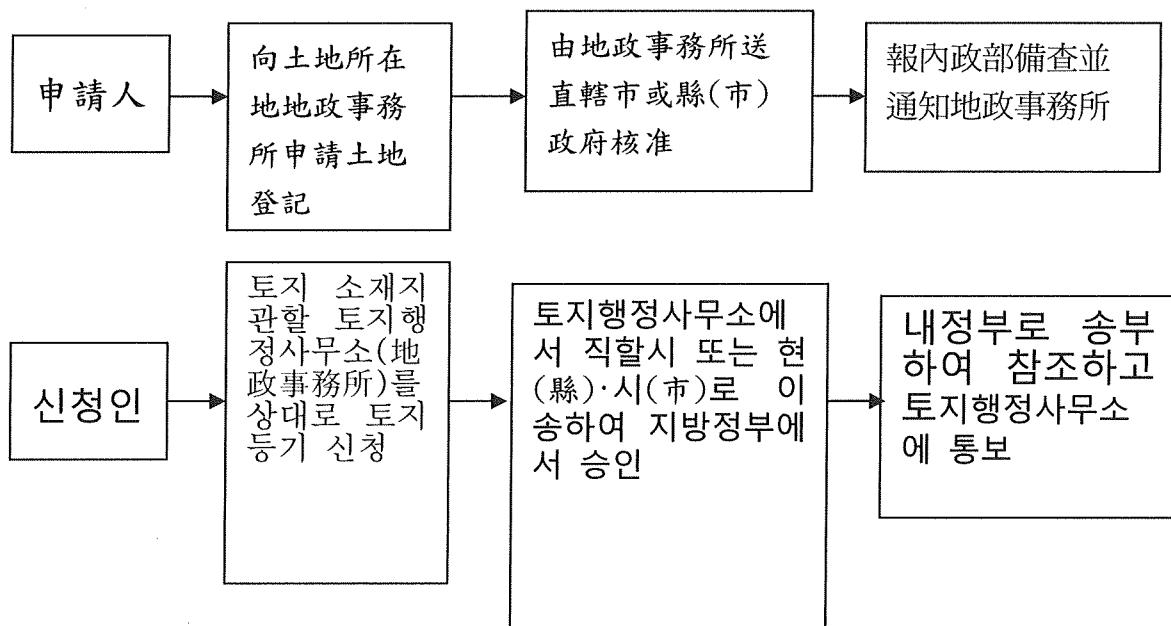
4. 因繼承取得上列土地，應於辦理繼承登記完畢之日起3年內出售與本國人，逾期未出售者，由直轄市

或縣(市)地政機關移請國有財產局辦理公開標售。

승계에 의해 상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승계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국인에게 판매하되, 정해진 기한 내에 판매하지 않은 토지는 직할시나 현(縣)·시(市)에 속하는 토지행정기관(地政機關)이 이를 재정부국유재산서(財政部國有產財署)로 이송하여 공개입찰을 수행하도록 한다.

5. 外國人申請取得、移轉土地建物權利，流程如下：

외국인의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 취득 및 이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6. 依規定取得或繼承之土地，因地籍原圖破損、滅失、比例尺變更或其他重大原因，得重新實施地籍測量。

규정에 따라 취득하거나 승계한 토지와 관련하여, 지적도(地籍圖) 원본이 파손·멸실되거나 비례자 변경 또는 기타 중대한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지적(地籍)에 대한 측량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